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72

발의연월일: 2020. 9. 29.

발 의 자:최종윤·김진표·박홍근

윤준병 • 이용빈 • 인재근

임오경 · 장경태 · 최혜영

한준호 • 허종식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르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, 목적 외 사용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,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으나 「지방재정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의 유사 사례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.

또한,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 처리는 「민법」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, 시설 설치·운영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서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, 「민법」 규정 미인지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무연고자의 유류금이 임의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음.

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,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을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#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와 유사한 「지방재정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를 추가함(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).
- 나.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는 '시설 설치· 운영자'가 하도록 하고, 일정 금액 이하는 특례에 의하여 처리토록 함 (안 제45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 중 "제42조까지"를 "제42조까지, 「지방재정법」 제97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4조제2항제1호,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9조제1항제1호"로 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) ①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민법」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. 다만, 사망인의 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5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무연고 유류 금의 경우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「민법」 제1053 조부터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~ 1의6. (생략) 1. ~ 1의6. (현행과 같음) 1의7.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 1의7. ------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 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「아 동복지법」 제71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부 터 제42조까지 또는 「형법」 --제42조까지, 「지방재정 제28장 · 제40장(제360조는 제 법」 제97조. 「영유아보육 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」 제54조제2항제1호, 「장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9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항제1호-----가. ~ 다. (생 략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1의8. ~ 3. (생략) 1의8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45조의2(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 리) ① 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

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민 법」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 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 의 재산을 처리한다. 다만, 사망 인의 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관할 시장・군수・구청 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 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 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별 소 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.